

입찰유의서

(LED등기구 교체공사)

2022년 05월

(주)가든파이브툴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주)가든파이브툼이 행하는 LED 등기구 교체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찰참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서류심사 및 물품규격서를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 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4조 (입찰서의 작성)

1.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4.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도 병기한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입찰서의 제출)

1. 입찰서는 입찰 장소에서 기재 및 날인하며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서 개봉 전에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6조 (경쟁입찰의 성립)

1.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재입찰 경우에는 단독입찰도 유효하며, 1차 입찰참가업체를 포함 한다.

제7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주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된다)
9.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서 개봉전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2.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가 등록 사항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

제8조 (입찰의 연기)

1. 입찰관련 일시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1. 입찰담당부서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의 결정)

1.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투찰하고, 투찰업체 입회 상태에서 개봉 후 최저가격 업체 낙찰함
2. 개찰 결과 최저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 업체를 결정함

제11조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삽입하지 않는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 (계약의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1.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물품 납부 완료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법인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준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12.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당 법인이 인정하는 자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 법인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당 법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